#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7 발의연월일 : 2020. 6. 22.

발 의 자:이철규·한기호·송기헌

유상범 • 권성동 • 허 영

이양수 · 이광재 · 이만희

이명수 · 박덕흠 · 윤창현

윤두현 · 서정숙 · 정경희

정점식 · 김정재 · 류성걸

이종성 · 최승재 · 유주경

김석기 · 박완수 · 추경호

조태용 • 태영호 • 김태흠

구자근 • 신원식 • 김철민

박범계 · 신정훈 · 한병도

임종성 의원 (34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1980년대 말 석탄합리화 조치 시행으로 인하여 경기침체에 빠진 폐광지역의 경제발전과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 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는 설립 이후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한 금액이 약 8조원에 달하고, 이중 약 50%는 국세(3조 5,729억원)와 지방세(3,567억원)이며, 이익금의 25%를

납부하고 있는 '폐광지역개발기금'은 1조 9,259억원에 불과한 상황임.

오히려 카지노 사업으로 인한 총 매출액의 10% 범위 내에서 납부되고 있는 '관광진흥개발기금'이 2조 1,051억원으로 폐광기금보다 더많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역행한다는비판이 제기되고 있음.

더욱이 지난 2016년 1,665억원이었던 폐광기금 납부금액은 최근 3년 평균 1,427억원으로 약 15%나 감소하였음. 경기침체 장기화와 더불어 2025년 일본의 오픈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장 시 국내외 관광객 유입 감소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어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입법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.

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필요한 추가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'폐광지역개발기금' 납부금의 한도를 현행 25%에서 30%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.

또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적용시한을 삭제하여 아직까지도 경제 회생이라는 목적달성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폐광지역 주민의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## 주요내용

가. 폐광지역 내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

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내야 하는 납부금 한도를 현행 25%에서 30%로 상향조정함(안 제11조제5항).

나. 이 법의 적용시한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 및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를 삭제함(안 법률 제5089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및 제3항 삭제).

#### 법률 제 호

###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5항 중 "100분의 25"를 "100분의 30"으로 한다.

법률 제5089호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 부칙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「관광진흥법」 적용의	제11조(「관광진흥법」 적용의
특례) ① ~ ④ (생 략)	특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	5
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	
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	
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	
익금 중 <u>100분의 25</u> 이내에서	<u>100분의 30</u>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	
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	
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	
여야 한다.	
⑥ (생략)	⑥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5089호 廢鑛地域開發支援	법률 제5089호 廢鑛地域開發支援
에관한特別法 부칙	에관한特別法 부칙
②(適用時限) 이 法은 2025년 1	<u>&lt;</u> 삭 제>
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	
③(有效期間만료에 따른 經過	<u>&lt;삭 제&gt;</u>
措置) 이 法의 適用時限만료당	
시 振興地區의 開發計劃에 따	
라 진행중인 開發事業 및 진행	
중인 支援措置에 관하여는 그	
진행중인 開發事業 및 지원이	
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法을	

적용한다.